

2014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시행계획 공고

『2014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·연구기관 등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4년 1월 15일
중소기업청장

1. 사업개요

- ‘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’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과정 또는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
- 2014년 지원규모 : 15억원

2. 지원내용

- 진단과제 : 중소기업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·연구기관 등 주관기관이 이공계전문가를 찾아 연계하고 해결방안을 진단
- 해결과제 : 중소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

< 지원범위 >

- ① 생산공정 또는 제품성능 개선
- ② 제품 표준화 또는 시제품의 제품화 추진 시 발생한 기술애로 개선
- ③ 융·복합 기술애로 해결 및 기타 위에 준하는 기술애로 해결

3. 신청자격 및 내용

□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
□ 주관기관

○ 대학·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과제관리시스템에 이공계 전문가 30인 이상을 소속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관

* 과제 관리시스템 : 중소기업청 기술인정보시스템(<http://techin.sanhak.net>)

○ 신규 주관기관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'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'를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확정

* 기존 주관기관은 자격요건(붙임 참조)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선정평가 없음

4. 지원금액 및 한도

□ 출연금 지원기준

○ 진단과제 : 총사업비의 100% 지원(1백만원 한도)

○ 해결과제 : 총사업비의 75% 이내(민간부담은 총사업비의 25% 이상)

* 민간(중소기업) 부담금의 20% 이상은 현금

□ 지원조건 : 해결과제 최대 4개월, 2천만원 한도

5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중소기업 신청기간 : 연간 3회(단, 진단과제는 2회 접수)

구분	진단과제	해결과제
1차	2014.2.12~2.21	2014.2.12~2.21
2차	2014.5.12~5.21	2014.5.12~5.21
3차	-	2014.8.11~8.20

□ 주관기관 신청기간 : 2014.1.22~2.5(신규 신청에 한함)

□ 신청방법 : 과제관리시스템 신청(<http://techin.sanhak.net>)

○ 참여기업 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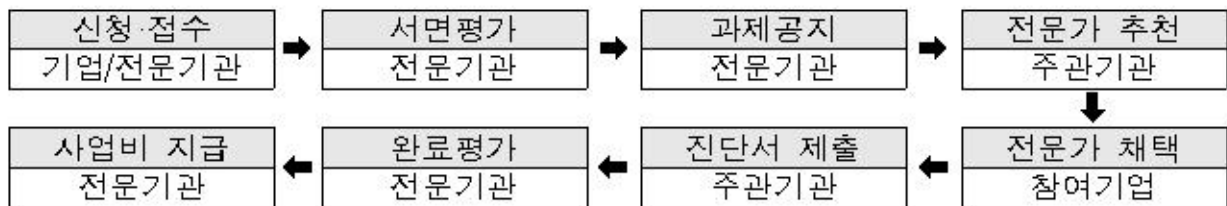
- (진단과제) 기술인정보시스템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기술애로 진단과제 → 과제신청 → 진단과제신청서 등록
- (해결과제) 기술인정보시스템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기술애로 해결과제 → 과제신청 →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

○ 주관기관 신청

- 기술인정보시스템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신규주관기관 신청서 등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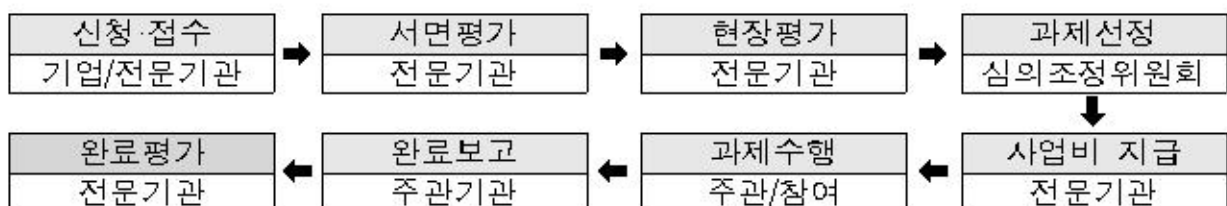
5. 선정 및 지원절차

□ 진단과제



- 전문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애로 해결가능성, 지원 필요성,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
- 선정된 신청기업의 기술애로를 과제관리시스템에 공지하고 주관 기관이 소속 이공계전문가를 연계하여 추천
-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진단서를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, 전문기관은 완료평가 후 사업비 지급

□ 해결과제



- 주관기관은 이공계전문가 및 신청기업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제관리시스템에 신청
- 전문기관은 서면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해당 차수별 지원 목표의 1.5배수를 선정하여 현장평가 시행(지원목표는 별도 공지)
-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체결(중소기업, 전문기관, 주관기관) 후 주관기관에 사업비 지급 및 과제 수행

<해결과제 연간 추진계획>

구분	신청·접수	과제선정평가	협약체결
1차	2월	3월	4월
2차	5월	6월	7월
3차	8월	9월	10월

6.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

※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,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고,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·지원 제외대상에 해당

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주관기관, 중소기업, 기술전문가)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확인된 경우
 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 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 - 기업이 부도, 휴·폐업인 경우
 - 국세·지방세 체납자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참여 가능)
 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(다만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(인)은 참여 가능)

-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 기본목적, 과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※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, 평가 진행중이거나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

7. 기타 공지사항

-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동 사업에서 진단과제와 해결과제 각각 1개 과제만 지원(진단과제를 수행하지 않고 해결과제로 직접 신청 가능)
- 과제책임자로 참여하는 이공계전문가가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는 2개이며, 연간 최대 3개까지 수행 가능
 - * 진단과제 및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해결과제는 동시수행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
- 서면평가 또는 현장평가 등에서 탈락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 1회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
- 이공계전문가 자격기준

구 분	자 격 내 용
산업계	박사학위 소지자, 석사(학사)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(7년) 이상 경력자, 연구소장 및 부장급 이상의 임직원
학 계	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
연구계	박사학위 소지자, 석사(학사)학위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(7년) 이상 경력자
기 타	기술지도사 또는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

-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'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' 및 '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 관리지침'을 적용함

8. 문의처

□ 사업안내

전문기관		연락처	문의사항
한국산학연합회	콜센터	1661-1357(내선 3)	신청·접수 및 향후 일정 등

※ 사업관련 홈페이지 안내

- 과제관리시스템 : <http://techin.sanhak.net>(기술인정보시스템)
-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: <http://www.smba.go.kr>
- AURI(한국산학연합회) 홈페이지 : <http://auri.or.kr>

신규 주관기관 신청 안내

□ 신청자격

-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·산업대학·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
-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
-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-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
-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
-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인증기관
-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
-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사업수행 지원 가능 기관
-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지정계획에 따라 선정된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
- 사업 특성상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

□ 선정요건

- 과제관리시스템에 소속 이공계전문가 정회원* 30명 이상 보유
 - * 정회원 : 소속기관, 논문, 경력, 정부사업 수행이력 등 필수정보 입력이 완료되어 전문기관이 정회원으로 승인한 이공계전문가
- 사업운영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전문기관이 판단한 기관
 - * 전담인력은 2015년부터 산학연 코디네이터 자격증 보유자로 한정

□ 선정절차

- 주관기관 신청자격 및 요건을 자체 검토 후 신청서 제출
- 전문기관이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고, 평가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인 기관을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
 - * '2013년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' 및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사업 (산학연협력기술개발,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등) 주관기관은 현장평가 제외
- 주관기관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요건 이행
 - * 기간내 선정요건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